

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6호 2002. 4. 16)

총무위원회
2002. 4. 29(월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4. 16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4. 16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4. 25 사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기획감사실장 조근도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인해 전문성이 대두되고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등 자문·연구기능이 증대되고 있으나, 보건위생, 농업분야 위원이 배제되어 있어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와 발전적인 시정방향 제시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.
- 시정시책의 공정성 확보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심의 요구부서 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보건위생과 농업분야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이 배제되어 구성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하고, 시정 시책추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요구부서 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,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